##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5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이용우·송재호·홍정민

홍성국 • 민형배 • 진성준

이광재 • 이수진 • 한준호

강준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동 법은 경제·인문·사회 각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을 적용 범위로 하면서도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주로 활용해온 각종 제도 등을 차용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인문·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4호).

법률 제 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343호	법률 제17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	1
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	
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을 말한다. <단서 신설>	<u>다만, 정책의 개</u>
	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
	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추진하는 사
	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u>&lt;신 설&gt;</u>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u>&lt;신 설&gt;</u>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

- 2. ~ 9. (생략)
-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저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5. (생략)

인	중	정최	백의	개별	<u>}</u>	등	을
설	립목	적으	로 6	하는	기	관	Ò
<u></u> 로/	() ()	H통령	형령	으로	정	하	는
<u>기</u> 된	관						

$2. \sim 9.$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